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	

제출년월일 : 2005. 8.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가격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 가액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일부개정
 - 11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 다음에 11-1 주택가격에 관한 확인란을 신설하고,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와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수수료 가액을 1통당 각각 400원으로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서협의 : 6월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필
- 라. 입법예고 : 실시(6.23 ~ 7.13)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 마. 규제개혁심사 : 필요없음.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 다음에 제11-1호 주택가격에 관한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주택가격에 관한 확인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1통	400원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통	4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11.지방세에 관한 증명				11.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400원		○ -----	---	-----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400원		○ -----	---	-----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400원		○ -----	---	-----	
○ 징수 유예증명	1통	400원		○ -----	---	-----	
<u><신설></u>				11-1.주택가격에 관한 확인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1통	400원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통	400원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령]

제35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16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